

『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 
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8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권기만 · 길윤옥 · 김도문 · 박교상 · 박세채  
윤서규 · 이갑선 · 임춘구 · 정근수 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8월 26일

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권 기 만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을인용하고 있는 의회소관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등 3건의 규칙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일부 문구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 정비(안 제2조·제3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본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 미시의회의 3개의 관련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3개의 관련 규칙을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규칙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